

참고자료. 2006년도 도시가스장려금, 열병합시스템 및 가스냉방지원제도 변경

1. 도시가스장려금(산업용 장려금)지원제도

- 가. 제2조(약정기간) : 약정유효기간을 2006. 12. 31까지 연장
- 나. 지급대상 : 산업용 수요가중 '05년 6월이후 천연가스 설비를 신, 증설한 산업체 및 천연가스용 열병합 설비를 신, 증설한 자
- 다. 지급금액 : 6~8월 추가사용량에 대해 20원/㎥ 지급

2. 열병합시스템 지원제도

- 가. 지급대상
 - 1) 열병합 설치지원금
'06년 1월 이후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자(열병합발전 설비의 소유주)
 - 2) 열병합 설계장려금
'06년 1월이후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설비의 원동기 계통을 설계한 기계설비설계사무소
- 나. 지급금액
 - 설치지원금 : 30,000원/kW (3천만원 한도) - 설계장려금 : 5,000원/kW (5백만원 한도)

3. 가스냉방 지원제도

- 가.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지급대상
흡수식, 가스엔진구동식 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 한 자(가스냉방 설비의 소유주)
- 나. 가스냉방 설계장려금 지급대상
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한 설비설계 사무소
- 다. 가스냉방 설치지원금/설계장려금 지급금액

구 분	'05년	'06년
5RT	250만원/대	좌동
5RT-30RT	100만원/대	50만원/대
30RT이상	1만원/RT	좌동
설계장려금	1만원/RT(5백만원 한도)	1만원/RT(10백만원 한도)

4. 산업체 열병합 가격우대제

- 적용대상 : 2006년말까지 천연가스 열병합을 도입(신설,교체)하고 가스공사, 도시가스사와 약정을 체결한 산업체

'06년(도매요금)	비 고
- 하절기 : 동일	- 5~9월
- 기타월 : 열병합용 고시요금(원료비+18.69원/㎥)	- 1~4월, 10~1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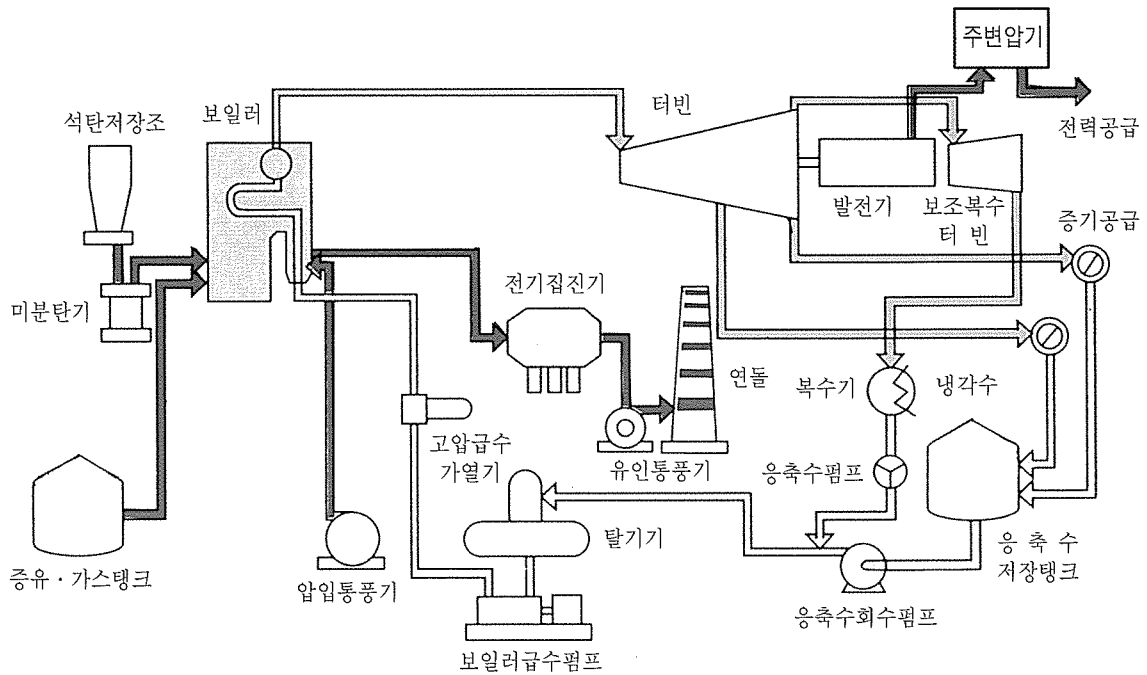
※ 소매공급비용은 적정투자 회수가격 범위에서 도시가스사별 자율결정

5. 공통사항

- 가. 신청기한 변경 : 가스공급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
- 나. 첨부서류 내용 변경 : 완성검사 필증 추가
- ※ 세부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(www.kogas.or.kr) 참조

열병합발전 : 종합에너지시스템 (Total Energy System)

※ 단일열원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로 생산공정용 증기 및 난방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,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함.



협회 업무 · 기능

- 운전효율 향상 · 운전비용 저감과 신규도입 촉진을 위한 기술진흥 도모 및 관련 제도의 연구 · 정책건의
- 전력시장 관련 및 환경규제 등 각종 기준완화 추진으로 경제성 향상 추구
- 기술세미나, 교육, 해외연수 및 간행물 발간 등 신기술 보급확대
- 회원의 권익증진 도모 및 기술 · 정보교류

열병합발전 협회지 광고로 지대한 홍보효과 거양

- 회원사는 물론 관련업체 · 단체와 정부부서 및 유관기관, 개인등에 정기배포 하므로써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.



사단
법인

한국열병합발전협회